

# NH Bank legal brief

# '뮤직카우'사례와 조각투자의 금융규제 동향

2022. 4. 13.

## 금융당국, 뮤직카우의 적법성 판단 결론 예정

금융위원회는 22. 3. 21. 뮤직카우 서비스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 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무 법적검토가 진행 중이며,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뮤직카우는 2021년말에는 누적회원수 85만명을 보유한 중형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전면수정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 자체가 아닌, 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받을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뮤직카우의 사업방식은 다소 복잡한데, 뮤직카우의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은 창작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구매하고, 이를 다시 신탁관리 업체인 저작권협회 등에게 맡기는 동시에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뮤직카우는 이 청구권을 다시 뮤직카우에셋으로부터 구매한 후 지분 단위로 분할된 형태인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만들어 플랫폼을 통해 회원에게 판매합니다.

이처럼 다소 복잡한 사업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뮤직카우 측은, 저작권의 일종인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저작권 신탁관리 업체를 통해신탁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을 고안해냈다고 설명합니다.



### 뮤직카우 서비스의 법적 쟁점

뮤직카우가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성격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매수대금을 받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구조는 일반적이 증권시장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뮤직카우 역시 저작권로 외에 회원들간 거래로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뮤직카우 영업방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금융투자업에 해당하고,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유사금융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 당되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파생상품과 증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수령하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제4조 제6항). 뮤직카우의 경우 투자자인 회원이 금전을 투자하고 뮤직카우 사업자가 음악저작권 수익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며,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회원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계약으로 해석할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 최초의 선례가 될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측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현행「자본시장법」상의 어떠한 증권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뮤직카우는 저작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내부감시,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실명계좌를 도입을 결정하고 투자자보호자문단을 발족하는 등 자체적인 내부통제 방침을 마련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동향 및 고려사항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지분 단위 형태의 투자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일종으로 해석됩니다. 조각투자는 다수의 구매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지분만큼 수익을 거두는 투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고가 명품이나 미술품, 세계적인 빌딩 등에 지분만큼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조각투자는 새로운 투자상품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투자 대상도 부동산, 와인, 한우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조각투자 기업과 기존 금융사의 제휴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기관은 뮤직카우와 제휴를 통해 MZ세대를 주 타깃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특히 **농협은행은 미술품 조각 플랫폼 '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마케팅, 신상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조각투자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도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음악저작권 외에 다른 조각투자 서비스도 동일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조각투자 대상이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투자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으면 조각투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분류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되는 '트레블룰' 등의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각투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법적 규제를 유예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방안으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및 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업무의 혁신성은 물론 위험관리 방안, 안정성 및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조각투자 사업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법무지원국 규제대응지원반

박혜원 반장

노은호 변호사

윤정은 변호사

**2** 02. 2080. 8741

**2** 02. 2080. 8745

**2** 02. 2080. 8739

@ hwonpark

@ eunho noh

@ jeyun8835

@nonghyup.com

@nonghyup.com @nonghyup.com